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

단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법 인 등 록 번 호)

소 재 지 :

발 급 사 유 :

공 동 대 표 :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며,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를 제출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